

**2019년도 돌봄로봇 중개연구 및 서비스모델 개발 사업
신규지원 대상과제 공고**

2019년도 돌봄로봇 중개연구 및 서비스모델 개발 사업 신규지원 대상과제를 다음과 같이 공고하니 해당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고자 하는 자는 관련 규정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2019년 2월 1일

국립재활원장, 돌봄로봇중개연구사업단장 이범석

< 돌봄로봇 중개연구 및 서비스모델 개발 사업 추진방향 >

「돌봄로봇 중개연구 및 서비스모델 개발 사업」은 돌봄로봇의 현장실증, 기술개선 중개연구, 서비스모델 개발 등 돌봄로봇 생태계 조성을 통하여 국민의 삶의 질 향상 및 돌봄 기술 산업을 육성

2019년도 전략목표

돌봄 받는 사람(중증장애인, 거동불편노인)의 일상생활지원 및 돌봄 주는 사람(요양보호사, 활동지원사, 가족 등)의 돌봄부담 경감을 위한 사람 중심 돌봄로봇의 생태계(실증, 중개연구, 서비스모델 등)를 조성하는 패키지형 R&D투자플랫폼 구축·운영

중점과제 및 추진방향

스마트돌봄 스페이스 기반 서비스모델 연구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돌봄로봇 실증과 활용가이드라인 개발 ○ 사회서비스, 공적급여 등과 연계 가능한 서비스모델 개발
돌봄로봇 안전평가 기준연구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돌봄분야별 돌봄로봇 품목분류 방안 제시 ○ 공통/분야별 돌봄로봇의 안전성평가 등 가이드라인 개발 ○ 돌봄로봇 규제완화 및 관리체계 방안 제시
데이터 테크놀로지 적용 연구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돌봄행위 등 데이터 측정 및 분석 기술 개발 ○ 돌봄데이터의 표준(안) 개발 및 법/제도 이행 연구 ○ 돌봄데이터테크놀로지 서비스 연구개발 및 시범적용

I. 통합공고 개요

※ RFP별 상세 지원내용은 “각 사업별 제안요청서(RFP)”를 확인

※ 선정예정 과제수는 상황에 따라 변동 될 수 있음

구분	공고단위 (RFP명)	지원규모	지원기간	지원대상	과제구성 요건	선정예정 과제수 (이내)
1. 돌봄로봇 중개연구 및 서비스 모델 개발	거동불편노인 스마트돌봄스페이 스 기반 중개 및 서비스모델 연구	· 400백만원 이내/년 (3/4차년도 350백만원)	· 4년 이내 (1차년도는 9개월)	산·학·연·병	-	1
	돌봄로봇 및 기술 개발 가이드라인 및 안전평가기준 연구	· 150백만원 이내/년 (3/4차년도 250백만원)	· 4년 이내 (1차년도는 9개월)	산·학·연·병	-	1
	스마트돌봄스페이스 기반 데이터테크놀로지 적용 연구	· 160백만원 이내/년	· 4년 이내 (1차년도는 9개월)	산·학·연·병	-	1

II. 신청요건

□ 보건의료기술진흥법 제5조제2항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

- 국·공립 연구기관
- 「특정연구기관육성법」의 적용을 받는 연구기관
- 「고등교육법」 제2조에 따른 학교
- 대통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부설연구소
- 「민법」이나 다른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인 연구기관
- 「보건의료기술진흥법」 시행령 제3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보건의료 기술분야의 연구기관·단체(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에 의한 병원급 의료기관 포함)

□ 신청 제한

- 신청 마감일 전날까지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기간이 종료되지 않은 연구자
- 국가연구개발사업 동시수행 연구개발과제수 제한 기준에 저촉되는 연구자
 - 「보건의료기술연구개발사업 관리규정」 제11조제2항에 따라 연구자가 참여연구원으로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연구개발과제는 최대 5개 이내로 하며, 그 중 주관 또는 세부연구책임자로서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연구개발과제는 최대 3개임
 - * 위탁연구책임자 및 위탁과제 참여연구원은 신청 제한 대상이 아님
 - * 신규과제 신청 시 현재 수행중인 과제가 신청마감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종료될 때에는 해당 과제를 참여 제한 대상과제에 포함하지 않음
(다만, 6월 30일 종료되는 연구개발과제까지 인정함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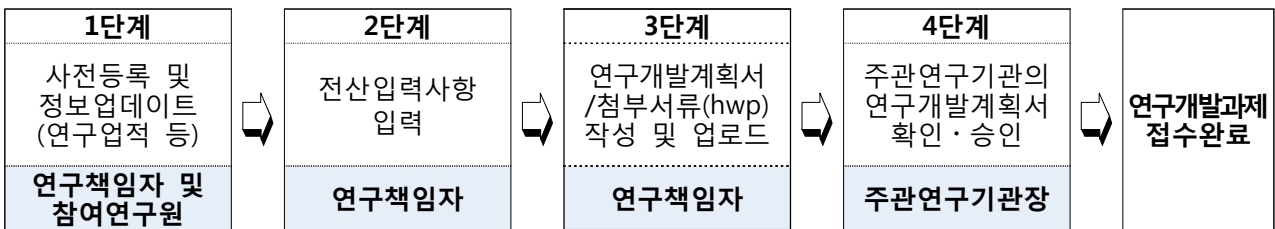
※ 세부사항은 미래창조과학부고시 제2017-5호 「국가연구개발사업 동시수행 연구개발 과제 수 제한 기준」 참조

- 연구개발계획서 제출 후에 참여 제한에 대한 사전요건심사를 실시하므로 주관·세부 연구 책임자는 연구과제 신청 전 본인의 국가연구개발사업 동시수행 연구개발과제수 점검을 실시하여 과제신청 가능 여부를 확인 요망
- 주관 및 세부책임자가 참여 제한기준을 초과할 경우, 선정과제가 탈락할 수 있음

Ⅲ. 신청 방법

□ 신청방법

- 보건의료기술 종합정보시스템(www.htdream.kr)에 전산입력 및 연구개발계획서/첨부서류 파일 업로드
 - ※ 연구자(연구기관)은 과제신청 전 동 시스템에 등록 및 최신 정보로 업데이트 요망
- 주관연구기관의 공인인증서를 활용한(전자인증) 과제 신청 확인 및 승인
 - ※ 기관용 공인인증서가 없는 경우 주관연구기관장의 과제신청 공문 별도 제출



※ 자세한 내용은 공모안내서 참조

□ 제출서류 및 기한

- 제출서류
 - 주관연구기관의 공인인증서를 활용한 전자접수
 - ※ 기관용 공인인증서가 없는 경우 주관연구기관장의 연구계획서 공문 제출
 - 주관연구책임자 자필서명(인)과 주관연구기관 직인이 찍힌 제본된 연구계획서 10부
 - 연구책임자의 성과실적 등 지원 자격을 증빙하는 첨부서류 등
- 제출기한

연구책임자 과제신청 (전산입력) 마감일	연구계획서 우편제출 마감일	주관연구기관 전자인증 (또는 공문제출) 마감일
2019. 3. 4.(월) 17 : 00	2019. 3. 5.(화) 17 : 00	2019. 3. 5.(화) 17 : 00

- ※ 전산입력기한 마감 시간까지 전산입력 완료 업수(접수마감 시간이후 수정 및 신청 불가)
- ※ 우편접수는 당일 도착분만 인정하며, 기한이후 도착한 계획서는 불인정

- 접수방법: 전자접수, 우편 및 방문접수
 - 서류의 접수는 돌봄로봇중개연구사업단 사무국으로 제출하시기 바라며,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

IV. 관련 법령 및 규정

- 「보건의료기술진흥법」,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, 「보건의료기술연구개발사업 관리규정」, 「보건의료기술연구개발사업 평가지침」, 「보건의료기술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관리지침」 등

※ 관련규정은 www.htdream.kr → 자료실 → 관련법규에서 확인

V. 기타

□ 참여기업 부담금(세부과제별 산정)

- ※ 제안요청서(RFP)에 별도의 기준이 있는 경우, 해당 RFP 기준 적용
- ※ 참여기업 부담금은 연구개발과제 협약을 체결하기 위해 사전에 확보되어야 하며, 이와 관련하여 협약이 지연될 경우 선정 취소 또는 지원 중단될 수 있음

○ 참여기업의 연구개발비 부담기준

항목		대기업	중견기업	중소기업
참여기업 부담 연구개발비 비율		총 연구개발비 대비 50% 이상	총 연구개발비 대비 40% 이상	총 연구개발비 대비 25% 이상
참여기업 부담 연구개발비 중 현금 부담 기준		부담액의 15% 이상	부담액의 13% 이상	부담액의 10% 이상
참여기업 부담 연구개발비 중 현금 부담 허용 비목 및 범위	참여기업 소속 연구원 인건비	현물 부담액의 50% 이내	현물 부담액의 70% 이내	-
	직접경비 중 보유하고 있는 연구기자재 및 시설비, 재료비, 시제품 제작에 필요한 부품비	기업의 현물부담액 중 인건비를 제외한 금액의 50% 이내	기업의 현물부담액 중 인건비를 제외한 금액의 70% 이내	-

※ 참여기업이 복합적으로 구성되고, 그 중 대기업의 비율이 3분의 1이하인 경우 참여기업부담 연구개발비 비율 : 총 연구개발비 대비 40% 이상. 다만, 참여기업 중 중소기업의 비율이 3분의 2 이상인 경우는 25% 이상으로 함

※ 그 밖의 경우 참여기업부담 연구개발비 비율 : 총 연구개발비의 50% 이상

- 세부과제를 수행하는 중견·중소기업이 청년인력(만18세 이상 만34세 미만)을 1명 이상 신규채용시, 현금부담금을 해당 인건비만큼 현물로 대체할 수 있음

- 해당 인력의 인건비 집행액이 민간부담현금의 감액분에 미치지 못한 때에는 해당연도 정산시 그 차액만큼 반납하여야 함

※ 단, 총 연구수행기간 내 해당 세부과제 정부출연금 총액이 5억원 이상인 경우, “청년인력 신규채용 기준(5억원당 1명)” 초과 채용 시 적용

(예 : 5억원 과제 - 2명 고용시 1명 인건비 감면, 10억원 과제 - 3명 고용시 1명 인건비 감면)

□ 연구시설·장비 도입시 유의사항

- 연구시설·장비(3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)의 도입 심의
 - 연구개발계획서 제출 시 '연구장비예산심의요청서(3천만원 이상~1억원 미만)'을 작성·첨부하여 '과제평가단'의 심의를 받아야 함
- 1억원 이상의 연구시설·장비를 구축할 경우 '국가연구시설·장비심의위원회(과학기술정보통신부 주관)'에서 심의 실시(선정과제 별도 안내)

□ 기술료 제도 안내

- 기술료 징수 및 사업단 보고사항
 - 연구개발성과 소유기관이 연구개발 성과를 실시하려는 자와 기술 실시계약을 체결할 경우 실시권의 내용, 기술료 및 기술료 납부방법 등은 두 기관이 합의하여 정함
 - ※ 기술실시계약을 체결한 비영리기관의 장은 기술실시 계약서 사본 1부를 전문기관에 제출
 - 연구개발성과 소유기관의 장은 해당연도에 징수한 기술료와 사용한 결과에 대해 「보건의료기술연구개발사업 기술료 관리지침」 관련 서식에 따라 기술료 징수 및 사용현황을 사업단에 보고하여야 함
 - ※ 기술료 관리지침에 따른 기술료 사용 기준에 따라 반드시 사용

※ 자세한 내용은 공고 안내서 참조

VI. 문의처

○ 홈페이지

- 소관부처 : 보건복지부 (www.mohw.go.kr)
- 전문기관 : 한국보건산업진흥원 보건의료기술 종합정보시스템 (www.htdream.kr)
- 사 업 단 : 돌봄로봇중개연구사업단 (국립재활원, www.nrc.go.kr)

<사업단 주소 및 연락처>

- 주 소: 서울시 강북구 삼각산로 58 국립재활원 돌봄로봇중개연구사업단 사무국 (재활연구소 재활보조기술연구과) (우편번호 01022)
- 접수·평가 관련: 02-901-1982, 02-901-1988, 02-901-1975
- F A X: 02-901-1910